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에 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13년 10월 4일

나. 청 원 자 : 16,343명[대표 : 강기수(형곡동)]

다. 회부일자 : 2013년 10월 7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0월 10일

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소개의원 : 김 성 현 의원

나. 청원내용

- 구미시 환경미화업무의 외주화는 “예산절감효과”라는 명목하에 진행 중이지만, 실제로 예산 절감이란 현장 종사자 인건비 하락을 뜻하며, 업체가 노임단가로 책정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어, 대행업체 종사자들은 “기간제” 및 간접고용의 성격을 가지며 근무의 어려움과 저임금 때문에 근속년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음

- 환경미화업무는 노동집약 업종이며 육체노동의 성격이 큰데 저인건비와 고용불안은 종사자의 처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외주화로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므로, 되도록이면 직영화하여 시에 소속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용 우

□ 본 청원의 건은,

-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을 강행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따른 종사자들에게 기간제 및 간접고용의 성격을 가지며, 저임금으로 근무 연수가 짧아지고 일자리 감소 등으로 주민서비스 제공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내용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직영화를 요구하는 것임.
- 구미시 생활폐기물처리는, 공공의 서비스 질 향상을 바탕으로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 2012년 10월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으로, 대형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 직영화하고, 일부지역에 대한 직접운영 전환시점을 2014년 1월 1일로 하였음.
- 금번 청원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 대한 위탁운영 결과, 예산절감 등 공익적 차원에서 2014년 이후에도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써,

○ 폐기물처리 업무는 궁극적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창출하여,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손익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청원 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검토결과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附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의견서 채택

붙임 : 의견서 1부.